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증인의 전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 목 차 】

I. 개 관	
1. 조직 및 정원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3
4. 재무결산	6
가. 재정상태	6
나. 재정운영	8
다. 순자산변동	9
II. 검토의견	10
◆ 총괄적 검토 ◆	10
1.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10
□ 행정직원 정원확대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필요	11
□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적극적인 충원 방안 마련 필요	16
2.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운영 성과 제고 필요	20
□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22
□ 서면심사를 통한 회의개최 지양 필요	28
◆ 개별사업별 검토 ◆	31
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31
□ 연례적 집행 부진에 대한 집행을 제고방안 마련 필요	31
□ 내부고발 활성화 노력 필요	35
4.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50)	40
□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노력 필요	40
□ 예산편성 시 적정규모를 파악하여 세목변경 최소화 노력 필요	43
□ 연구비의 집행을 제고 및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서면심사 지양 필요	44

【참 고 자 료】	2023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치결과 ……	51
-----------	--	----

I. 개 관

1. 조직 및 정원

2025년 6월 30일 기준, 공수처는 4관 4부 5과로 구성되고 별도의 소속 기관은 없으며, 정원 총 85명 현원 총 78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도〉

(2025. 6. 30.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원 및 현원 현황〉

(2025. 6. 30. 기준)

구 분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처·차장 제외)	수사처수사관	행정직원	계
정원	1	1	23	40	20	85
현원	1	1	18	38	20	78

2.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181	181	0.0	100.0	-	-

□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세입예산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181백만원으로, 이 중 미수납금액 없이 전액 수납 완료하였음.

-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반납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59-596), 명예퇴직수당 환수 가산금 등 가산금(58-581)과 수사관 채용 응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사건기록열람등사 수수료 등 기타 잡수입(69-691)임.

<2024년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			2025 예산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B/A(%)	
가산금	-	-	1	1	100	-
기타경상 이전수입	141	133	178	178	100	-
기타잡수입	2	1	2	2	100	-

3.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 · 감(△)액			세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증 · 감 (△)액				
20,680	20,680	—	—	—	20,680	18,274	123	2,283

□ 2024회계연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06억 8,000만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4%인 182억 7,4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0%인 22억 8,300만원임.

□ 지출액 182억 7,400만원을 살펴보면,

공수처 운영 인건비와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가 108억 2,8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 중 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정보화체계구축및운영: 39억 3,300만원 (21.5%)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23억 6,700만원 (12.9%)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1억 3,100만원 (6.2%)
- 공판활동지원: 1,500만원 (0.1%)
- 공수처운영인건비: 71억 6,000만원 (39.2%)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36억 6,800만원 (20.1%)

□ 불용액 22억 8,300만원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 집행잔액 등으로 인건비 12억 2,100만원,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5억 8,600만원,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4억 2,800만원,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2,500만원, 공판활동지원 1,500만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800만원이 각각 불용됨.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				2025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총 계	15,461	20,680	20,680	18,274	88.4	25,268
1000 공수처 활동 계	4,432	7,930	7,930	7,446	93.9	12,103
1001 공수처 업무정보화 계	3,079	6,181	6,181	6,300	101.9	10,643
정보화체계 구축및운영 (1001-300)	1,916	3,851	3,851	3,933	102.1	9,788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001-301)	1,163	2,330	2,330	2,367	101.6	855
101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계	1,344	1,719	1,719	1,131	65.8	1,430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1,344	1,719	1,719	1,131	65.8	1,430
1012 공판활동 계	9	30	30	15	50.0	30
공판활동지원 (1012-301)	9	30	30	15	50.0	30
7000 행정지원 계	11,029	12,750	12,750	10,828	84.9	13,165
7001 소속기관 인건비 계	7,111	8,381	8,381	7,160	85.4	8,659

구 분	2023결산	2024				2025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7,111	8,381	8,381	7,160	85.4	8,659
7011기본경비 계	3,918	4,369	4,369	3,668	84.0	4,506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총액 (7011-200)	1,829	1,818	1,818	1,667	91.7	1,933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7011-201)	2,089	2,551	2,551	2,001	78.4	2,573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A)	2023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14,484	13,286	1,198	9.0 %
부 채	26	23	3	13.0 %
순자산	14,458	13,263	1,195	9.0 %

□ 2024회계연도말 자산은 144억 8,4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말 대비 11억 9,800만원 증가함.

- 유동자산 중 미수채권은 미수기타수익 감소로 전년대비 1억 7,600만원 감소하였음. 기타유동자산은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선급금이 19억 2,600만원 감소하고 선급비용이 4,000만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18억 8,600만원 감소함.
- 일반유형자산 중 구축물은 신규 취득으로 1억 4,0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3억 1,000만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1억 7,000만원 감소함. 집기 비품 등 기타유형자산은 신규 취득 등으로 2억 3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으로 3억 700만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1억 400만원 감소함.
- 무형자산 중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및 외부구입소프트웨어가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하여 60억 3,100만원 증가하였으나, 무형자산상각 등으로 25억

7,000만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34억 6,100만원 증가함.

□ 2024회계연도말 부채는 2,6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말 대비 300만원 증가함.

- 기타 유동부채는 주로 예수금 증가로 전년대비 3백만원 증가함.

□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억 9,500만원이 증가한 144억 5,800만원임.

나. 재정운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A)	2023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¹⁾	6,184	6,454	(270)	(4.2 %)
II. 관리운영비 ²⁾	12,037	12,183	(146)	(1.2 %)
III. 비배분비용 ³⁾	—	—	—	—
IV. 비배분수익 ⁴⁾	9	182	(173)	(95.1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8,211	18,455	(244)	(1.3 %)
VI. 비교환수익 등 ⁵⁾	—	—	—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18,211	18,455	(244)	(1.3 %)

□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82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400만원 감소함.

- 프로그램순원가 61억 8,400만원에서 관리운영비 120억 3,700만원을 가산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등 비배분수익 9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재정운영순원가는 182억 1,100만원임.

- 한편, 2024회계연도에는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대비 2억 7,0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외주용역비 및 소모품비 감소 등이 반영된 것임.

- 1) 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사업비용에 해당함.
- 2)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의미함.
- 3)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임. 비배분비용의 예로는 일반유형자산의 처분 손실,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4)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임. 비배분수익의 예로는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이익,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자금대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5)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함.

다. 순자산변동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A)	2023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I.기초순자산	13,263	13,813	(550)	(4.0 %)
II.재정운영결과	18,211	18,455	(244)	(1.3 %)
III.재원의조달및 이전	19,406	17,905	1,501	8.4 %
IV.조정항목	—	—	—	—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4,458	13,263	1,195	9.0 %

- 2024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은 132억 6,3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182억 1,100만원이며, 재원의조달및이전은 국고수입 및 기타재원조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5억 100만원 증가한 194억 600만원임.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과 조정 항목을 가산한 금액인 기말순자산은 144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500만원 증가함.

Ⅱ. 검토의견

◆ 총괄적 검토 ◆

1.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 결산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인력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보면, 2025년 5월 기준 검사는 정원 25명에 현원 20명, 수사관은 정원 40명에 현원 38명, 행정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계
정원	25	40	20	85
현원	20	38	20	78
결원	△ 5	△ 2	—	△ 7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파견인력 현황을 보면, 2025년 5월 기준 수사인력 3명, 행정인력 18명 등 총 21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인력 현황〉

구 분	파견기관	인원 수
수사인력(3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2명
행정인력(18명)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14명
	공공기관	3명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년도 공수처의 보수(110-01)는 총 83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71억 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5.4%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수(110-01)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보수(110-01)	편성액	8,101	8,317
	집행액	7,065	7,103
	집행률(%)	87.2	85.4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행정직원 인력증원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필요

현재 공수처의 행정직원 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명 이내로 법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행정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운영 중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2조(수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수사처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수사처수사관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정원 중 1명(서기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행정안전부,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인사혁신처,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처장은 파견규모·직급·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3] 직원 정원표(제12조제3항 본문 관련)

직원 정원표(제12조제3항 본문 관련)

총계	20
일반직 계	20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비서)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시설주사	2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기록연구사	1
전문경력관 나군	1

비고

1. 직원 정원 중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에 기록연구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기록연구사 1명을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으로 대체하거나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직원 정원 중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 100명 이하로 운영되는 경우 행정주사 1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 특검 또는 일반적인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조직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여 국회, 예산, 인사 등 독립적인 행정 소요가 존재함에도, 타 수사기관과 비교하여 검사정원 대비 검사 외 인력 정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 수가 실제 소요대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찰청의 검사외 정원 비율 비교〉

기관**	검사정원	검사외인력 정원	검사대비 검사외 인력 비율
대검찰청	68명	534명	7.85배
서울중앙지검	267명	870명	3.25배
대전지검	73명	221명	3.02배
부산지검	84명	303명	3.6배
광주지검	74명	249명	3.36배
강릉지청	11명	53명	4.81배
검찰청 전체	2292명	8391명	3.66배
공수처	25명	60명**	2.4배

* 지검 및 지청 자료는 일부만 무작위 기재하였음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자료: 2024년 검찰연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 기관의 기획·관리는 그 연속성을 위해 정원 내 직원이 담당하고 집행·실무는 파견자 등 정원 외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수처는 행정직원 정원 20명 중 처장 비서관 1명 및 간부 5명(기획조정관, 인권감찰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을 제외한 14명만 조직유지기능 실무에 투입될 수 있어 인사, 회계, 조직 등 기관유지를 위한 주요기능을 다수의 파견인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파견인력은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공수처 기관유지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보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조직기능의 담당 현황〉

단위업무	주요 세부 업무	담당자
인사	검사 인사	소속직원(연구사)
	수사관 인사	파견(지자체6)
	공무직 인사	파견(지자체6)
총무	물품관리(물품관리관)	소속직원(행정5)
	과 서무	소속직원(공무직)
회계	회계·계약(지출관)	파견(지자체5)
	급여·복지후생	소속직원(행정6)
조직	직제·조직진단	소속직원(행정6)
정보화	정보화 총괄	파견(전산6)
	KICS 총괄	소속직원(전산6)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에 따라 2022년도에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역량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는 조직·인사·회계 등 기관유지의 핵심기능 업무 담당자를 정원 내 인원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의 행정직원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제21대 국회는 공수처의 행정직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⁶⁾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인하여 모두 폐기되었고,

6) 의안번호 제2110857호 이수진의원안, 의안번호 제2111515호 송기헌의원안, 의안번호 제2118489호

이후 제22대 국회는 행정직원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의안번호 제2200876호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 발의)등이 다수 발의⁷⁾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수처는 기관유지를 위한 핵심업무를 정원 내 인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수처 소속 행정직원 및 파견공무원의 적절한 부서배치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기관유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권인숙의원안, 의안번호 제2124336호 권칠승의원안, 의안번호 제2124664호 소병철의원안

7) 의안번호 제2201405호 이성윤의원안, 의안번호 제2207942호 전현희의원안, 의안번호 제2210337호 윤준병의원안, 의안번호 제2210404호 최민희의원안

□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적극적인 충원 방안 마련 필요

공수처의 수사처검사 정원은 25명인데 25년 5월 기준 현원은 20명에 불과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할 수사처검사 결원이 총 5명에 달하였음.

공수처법 제8조⁸⁾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임. 그런데 공수처 최초 출범 당시 검사로 임용되었던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은 임기만료 전 퇴직하였고, 2명 중 1명은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연임에 실패하였는바, 결과적으로 1기 검사 13명 중 1명만이 연임하여 연임 비율이 7.7%에 불과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수사처검사 중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18명의 재직기간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3년 이상 재직자 수는 4명에 불과하였고, 2년 이상 재직자 수도 도합 7명에 불과하여 공수처 출범(2021년 1월 21일) 후 약 4년 5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처검사 중 정원대비 2년 이상 재직자 비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처수사관의 경우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인데, 현원 38명 중 3년 이상 재직한 수사관 수는 21명으로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원(40명)대비 52.5%에 불과하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퇴직자 수는 총 18명으로 정원(40명)대비 45%에 달하였음.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재직기간별 인원수〉

(단위: 명)

구 분	0 ~ 1년	1 ~ 2년	2 ~ 3년	3년 이상	합계
검사 (처장·처장 제외)	7	4	3	4	18
수사관	5	2	10	21	38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근 3년간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채용·퇴직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검사	채용인원	21	3	10	1	6	41
	퇴직인원	0	5	7	11	0	23
수사관	채용인원	33	12	3	6	0	54
	퇴직인원	0	8	3	7	0	18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와 같이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높은 퇴직률이 유지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 저하로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잦은 인력 공백은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됨.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높은 퇴직률과 관련하여, 공수처는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경우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과는 달리 임기제로 운영되고, 특히, 수사처검사는 연임이 3회로 제한되어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제시함.

공수처 설명과 같이, 검찰청 검사의 경우 「검찰청법」 제39조9)에 따라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을 뿐 별도의 연임제한은 없는 반면, 수사처검사의 경우 최대 9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바, 연임제한에 따른 신분불안이 수사처검사의 높은 퇴직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임.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는 수사처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115호)¹⁰⁾이 발의한 바 있고, 제22대 국회도 의안번호 제2207942호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다만, 퇴직한 수사처검사가 공수처의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비판하는 기고문을 언론사를 통해 공개한 사례¹¹⁾ 및 높은 퇴직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검사 연임 재가 지연 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연임제한 외에도 채용 또는 인사 측면에서 수사처검사의 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의 연임제한 규정 개정 등 수사처검사의 연임제한에 따른 신분불안 해소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 및 추진함과 동시에, 검사 및 수사관 채용기준 및 절차를 점검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9)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10) 현재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됨.

11) 법률신문,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 2023.11.30.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632>

확립하는 등 건전한 내부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

2.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운영 성과 제고 필요

□ 결산 개요

공수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각종 심의·징계·감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공수처는 수사와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감찰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공소와 관련, 공소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였음.

〈공수처 산하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운영근거	위원 수 (내부위원)	소집요건	심의대상	비고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의 분과)	「공수처 수사 심의위원회 운 영에 관한 지침 (공수처예규)」	12명	처장의 요청	①직접수사 개시 여 부 ②국민적 의혹 제기 사건 수사방향 ③구속영장 청구 여 부 ④처장의 이첩요청 여부	
수사심의위원회 (수자문 분과)	「공수처 수사 심의위원회 운 영에 관한 지침 (공수처예규)」	13명	처장의 요청	①수사 처리과정의 적정성 등 ②강제수사의 필요 성 및 방식	수사자문단 (‘ 24. 1. 25.) 수사 심의 위원회로 통합

위원회명	운영근거	위원 수 (내부위원)	소집요건	심의대상	비고
영장심의 위원회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공수처 영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공수처시행규칙)」	9명	사법 경찰관의 심의 신청	①체포·구속영장 ②압수·수색·검증 영장 ③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	
검사징계 위원회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7명 (3명)	처장의 요청	① 검사의 징계 사 건심의 등	
공보심의 위원회	「공수처 사건 공보 준칙(공수 처훈령)」	9명 (1명)	—	①공소제기한 사건 ②공소제기요구한 사건 ③불기소 등 사건 ④수사종결 전 사건	
감찰 위원회	「공수처 감찰 위원회 운영 규 정(공수처훈 령)」	9명	위원장 요청 또는 처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 요청	①감찰업무의 기본 방향 ②인권감찰관이 회 부한 중요 감찰사건 에 필요한 조치 ③비위행위 조치기 준 및 처리절차	
내부 고발자 구조 심의 위원회	「고위공직자법 죄등 내부고발 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5명 (2명)	위원장 요청	①포상금 지급 여부 등 ②구조금 지급 여부 등	
공소심의 위원회	「공수처 공소 심의위원회 운 영에 관한 지침 (공수처예규)」	12명	처장의 요청	①사건 공소제기 여부 ②기소 여부 판단의 법 률·사실적 쟁점사항 ③공소제기 사건등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④무죄판결 등에 대한 상소 여부	

□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2024년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등 수사와 관련한 6개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경비를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사업에, 공소심의위원회의 경비를 “공판활동지원(1012-301)”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음.

〈2024년도 공수처 위원회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	집행	집행률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 감찰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59,865	합계 : 8,694 - 수사심의 : 2,204 - 영장심의 : 1,489 - 공보심의 : 3,600 - 검사징계 : 1,400	14.5%
공소심의위원회	10,600	2,200	20.8%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런데 수사·공소관련 각 위원회의 2024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감찰위원회를 제외한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등 수사 관련 심의위원회의 집행률은 14.5%, 공소심의위원회의 집행률은 20.8%로 나타났고, 특히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예산의 집행률은 0%에 그침.

〈공수처 운영 각 위원회 및 자문단 등의 참석수당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위원회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5월
수사지원 및 수사일 반 (1011-301)	수사심의 위원회	편성액	49,500	49,500	편성액 : 59,865 집행액 : 8,694 - 수사심의 : 2,204 - 영장심의 : 1,489 - 공보심의 : 3,600 - 검사징계 : 1,400 집행률 : 14.5%	편성액 : 29,050 집행액 : 3,264 - 수사심의 : 1,464 - 공보심의 : 1,500 - 검사징계 : 300 집행률 : 11.2%
		집행액	5,400	7,966		
		집행률(%)	10.9	16.1		
	수사 자문단	편성액	67,500	67,500		
		집행액	6,000	7,600		
		집행률(%)	9.2	11.3		
	영장심의 위원회	편성액	40,500	40,500		
		집행액	—	—		
		집행률(%)	—	—		
	공보심의 위원회	편성액	66,000	66,000		
		집행액	4,966	5,300		
		집행률(%)	7.5	8.0		
	감찰 위원회	편성액	4,200	4,200		
		집행액	2,800	2,200		
		집행률(%)	66.7	52.4		
	내부고발 자구조심 의위원회	편성액	6,300	6,300		
		집행액	1,500	—		
		집행률(%)	23.8	—		
공판활동 지원 (1012-301)	공소심의 위원회	편성액	48,000	47,925	10,600	10,600
		집행액	4,365	4,212	2,200	700
		집행률(%)	9.1	8.8	20.8	6.6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지속되어 2025년 6월 현재까지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한 건의 회의도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는 각 1차례 개최되었음. 2025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및 공판활동 지원 사업의 위원회 수당 예산 총 3,965만원 중 집행액은 396만원(약 10%)에 불과하여 집행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위원회 수당 예산의 집행부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첫째, 위원회 예상개최횟수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편성 당시 가정하였던 회의 개최횟수와 실제 개최횟수 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임.

〈수사·공소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단위: 회)

구 분		수사심의 위원회 (심의분과)	수사심의 위원회 (자문분과)	영장심의 위원회	공보심의 위원회	감찰 위원회	내부고발자 구조심의위	검사징계 위원회	공소심의 위원회
구성시기		2021.6.	2021.6.	2021.6.	2021.9.	2022.9.	2021.7.	2021.7.	2021.6.
2021년	계획	68	30	—	—	—	—	—	68
	실적	1	1	1	6	—	1	1	2
2022년	계획	15	15	15	20	2	7	—	16
	실적	5	4	—	5	2	1	—	3
2023년	계획	15	15	15	20	2	7	—	14
	실적	3	3	1	5	2	—	—	2
2024년	계획	30*							6
	실적	1	—	1	4	2	—	2	2

* 주 : 위원회 개최 계획(30회) {전체위원회 20회, 소위원회 10회}

— 사 유 :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24. 1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각 위원회별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예산 편성을 위원회 개별 편성이 아닌 통합하여 30회로 편성을 하였음. 그럼에도 2024년 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심의 계획인 30회와 달리 개최횟수가 수사심의위원회 1회, 영장심의위원회 1회, 공보심의위원회 4회, 감찰위원회 2회, 검사징계

위원회 2회로 도합 10회(약 34%)에 그쳤음.

각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이제까지의 회의개최 실적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 편성 시 위원회 수당 예산이 과다하지 않도록 위원회 회의의 예상개최 횟수를 더욱 합리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둘째, 관계 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한 건의 회의만이 개최되었음. 동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장심의위원회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일반적으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임.

그런데 공수처법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수처에게 수사권 또는 기소권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경우 영장신청을 검찰청 검사와 수사처검사 중 누구에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공수처 출범 후 현재까지 사법경찰관이 검찰청

검사가 아닌 수사처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한 사례는 1건 발생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조(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수사처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두는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체포·구속영장
2. 압수·수색·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이러한 상황에서,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련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영장 신청을 어느 기관 검사에게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관계 수사기관과 영장 신청 기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수처에게 수사권 또는 기소권이 있는 범죄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수처는 관련 수사기관과 영장 신청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의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는 범죄와 관련한 영장의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도록 관련 수사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후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서면심사를 통한 회의개최 지양 필요

공보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달리 모두 서면을 통한 심의로 회의를 대체하였음. 공보심의위원회의 2024년도 회의개최내역을 보면 4월 15일, 4월 19일, 7월 29일, 11월 5일 총 4차례 회의는 모두 서면심사를 통해 개최하였음.

〈2024년 공수처 소관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명, %)

위원회명	일자	장소	참석계획 (A)		참석실적 (B)		참석률 (B/A)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분과)	5.8.	공수처 회의실	20	—	9	—	45	—
영장심의 위원회	9.24.	공수처 회의실	9	—	9	—	100	—
감찰위원회	6.21.	공수처 회의실	9	—	5	—	56	—
	10.10.	공수처 회의실	9	—	6	—	67	—
검사징계 위원회	7.1.	공수처 회의실	4	3	4	—	100	—
	10.16.	공수처 회의실	4	3	4	1	100	33
공보심의 위원회	4.15.	서면	12	—	11	—	92	—
	4.19.	서면	12	—	11	—	92	—
	7.29.	서면	9	—	9	—	100	—
	11.5.	서면	9	—	9	—	100	—
공소심의 위원회	11.4.	공수처 회의실	20	—	7	—	35	—
	12.11.	서면	12	—	8	—	67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공보심의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1조에 따라 설치되어 사건의 공보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동 준칙 제23조제1항에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며, 동조 제2항에서 공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 회의를 개의하고 안전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¹²⁾하고 있음.

그럼에도 공수처는 2024년 개최한 4건의 위원회 회의를 모두 서면을 통한 원격심사를 하였는바, 공수처가 다른 위원회의 회의와 달리 공보심의위원회를 모두 원격으로 개최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외부위원의 회의참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 확보 및 장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원격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공수처는 수도권에 소재한 정부과천중합청사에 위치하여 장소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보심의위원회 회의는 2024년 4회로 횟수가 많지 않아 원격으로 회의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격 회의 개최를 지양하고 공수처 회의장을 활용하여 개최하는 것이 바람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3조(의결 및 효력) ① 공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 공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안전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 및 의결은 위원회장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③ 공수처는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사건에 대한 공보를 해야 한다.

직할 것임. 이후 공수처는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회의 개최를 지양하고 공수처 회의장을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개별사업별 검토 ◆

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 결산 개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은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역량의 강화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17억 1,9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5억 6,700만원인데, 이 중 11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2,800만원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719	—	△152	—	1,567	1,131	8	428	1,430

□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집행을 제고방안 마련 필요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매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101-301) 사업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연례적으로 저조함. 연도별 각 집행률은 2021년 53.9%, 2022년 49.9%, 2023년 68.8%, 2024년 72.1%로

최근 3년간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예산편성 대비 80% 미만의 집행률이 지속되고 있음.

〈연도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 (1011-301)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현액	1,532	2,363	2,015	1,567
집행액	825	1,181	1,388	1,131
이월액		45	—	8
불용액		1,137	627	428
집행률	53.9%	49.9%	68.8%	72.1%

* 주 1) 2021년에는 수사지원 사업(1011-301)과 수사일반 사업(1011-302)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2022년부터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1011-301)으로 통합됨.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구체적으로 2024년 세부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내역은 포상금 0%, 기타보전금 8%, 임차료 31% 등으로 나타남. 공수처는 집행부진 사유로 직접수사 활동을 지원하는 수사 인력 부족 및 수사 상황에 따라 집행 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수사인력 보강을 통해 집행률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기능·비목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4년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719	△152	1,567	1,131	72.1%
－ 일반수용비	303	—	303	179	59%
－ 공공요금 및 제세	14	—	14	4	28%

- 임차료	86	-	86	27	31%
- 국내여비	265	110	155	69	44%
- 국외업무여비	60	-	60	23	38%
- 포상금	22	-	22	-	0%
- 기타보전금	24	-	24	2	8%

그러나, 집행률이 0%인 포상금, 8%의 기타보전금은 수사 인력 보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불용 포상금을 공익신고에 대한 홍보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 사회 공헌 활동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 포상금 규모 및 종류의 현실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범죄등은 권력형 비리범죄로 상호 간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범행이 매우 은밀히 이루어지는바, 내부고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 및 내부고발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인데, 공수처 포상금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별표 1]에서 최대 1억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상금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도록 규정¹³⁾함.

13)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포상금)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은 상한이 없으며, 공수처 포상금에 비하여 최대 10배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공수처도 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수처 포상금과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액 비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상 포상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상 보상금	
벌금, 몰수 등 재산형 부과 금액 기준	지급액 기준	보상대상가액 ¹⁴⁾	산정기준
1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5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천만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20억원 초과	1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14) “보상대상가액”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함

□ 내부고발 활성화 노력 필요

「공수처법」 제46조제2항은 공수처가 내부고발자¹⁵⁾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신변안전조치, 제8조에서는 포상금, 제9조에서는 구조금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 공수처 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은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포상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절차와 지급기준을 규정¹⁶⁾하고 있음.

15) 내부고발자의 정의는 「공수처법」이나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공수처 고시인 「공수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함.

「공수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고발자”란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약·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

16) 「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장 신변안전조치 : 제15조(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제16조(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제5장 포상금: 제2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1조(포상금의 신청), 제22조(의견청취)

제6장 구조금: 제23조(구조금의 지급 항목), 제24조(구조금의 신청), 제25조(구조대상가액 등), 제26조(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공수처의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관련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조(신변안전조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처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안전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처검사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과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진 사실
2. 제4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해제된 사실
3.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사실

제8조(포상금)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사항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 5. (생략)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구조금) ① 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2.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처장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④ 처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규정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1032-301)중 일반수용비(210-01)에 특정범죄신고자, 증인, 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 관련 업무위탁비로 400만원, 포상금(310-03)에 내부고발자 포상금, 참고인여비 등 총 4,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2024년에는 단 1건도 집행되지 않았음.

〈2023년 공수처의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집행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일반수용비 (210-01목)	특정범죄신고자, 증인, 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 관련 업무 위탁비	200,000원*20회	4,000	—
	포상금 (310-03목)	내부고발자 포상금, 참고인 여비 등 구조금	포상금 22,000 참고인 여비 등 구조금 24,500	46,500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지원예산 집행 부진의 1차적 원인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임. 공수처 설명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이후 이루어진 내부고발 수는 총 2건에 불과하였고, 이 중 구조금 등 지원신청을 한 경우는 1건이며 지급내역은 0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범인인 고위공직자에 의한 증거인멸 또는 내부통제가 용이하여 수사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고발자로부터 수사 단서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고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7월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하여 주요 정부·공공기관에 배포하였고,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제화 연구용역 실시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수처의 내부고발 안내서 발간은 1회성으로 실시되어 2024년에는 내부고발 안내서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위공직자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에 대한 별도 홍보도 이루어진 바가 없는 등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수처는 홍보·교육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공수처와 유사하게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조치를 두고 있는 법무부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각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통합하여 홍보·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보임.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도 교육 예산내역〉

사업명	내역	예산액(천원)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5)	공공, 민간기업 대상 교육자료 제작	10,000
	업무매뉴얼,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	4,923
	합계	14,92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50)

□ 결산 개요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5억 5,100만원이고, 이월예산은 1억 1,500만원이며, 이 중 20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억 3,500만원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551	—	—	—	2,551	2,001	115	435	2,573

□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노력 필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1천분의 36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을 제외한 행정직원 정원은 총 20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명의 장애인 채용의무가 있음.

그러나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아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

사업	세목	연도(년)	납부액(원)
공수처 운영 기본 경비(비총액) (7011-25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022	19,445,860
		2023	22,284,080
		2024	23,403,15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현재 행정직원 정원 20명을 모두 채용한 상태여서 장애인을 추가 채용할 수 없어 의무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공수처는 현재 수사처 수사관 중 1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수사처 수사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어서 의무고용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행정직원 인원이 법정되어 있어 실제 소요 인력에 비해 정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부득이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법률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추후 행정직원의 신규채용 소요 발생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수처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해당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수처의 행정직원이 전원 채용 완료된 관계로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추후 예산편성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예산편성 시 적정규모를 파악하여 세목변경 최소화 노력 필요

공수처는 2022년 이후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례적으로 집행함에도 회계연도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24. 1. 26.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목 변경을 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시 적정규모를 파악하여 세목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중 세목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세목변경일	목-세목코드	목-세목코드	금액
		~에서	~으로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2024. 1. 26.	일반 수용비 (210-0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3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연구비 집행률 제고 및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서면심사 지양

공수처는 일반연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200만원을 불용하였고, 정책연구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5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각 연구비의 집행률은 일반연구비의 경우 32%, 정책연구비의 경우 29.5%로 연구비의 집행률 제고가 필요함.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중 연구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일반연구비 (250-01)	150	—	—	150	48	—	102	32%
정책연구비 (210-01)	220	—	—	220	65	45	110	29.5%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에 관하여 공수처는 정책연구비는 관련 연구용역의 2차례 무응찰에 따른 유찰로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의견이었으나, 유찰된 연구용역인 「공수처 검사(수사관)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는 입찰 마감기한을 2024. 11. 18.로 하여 2024. 11. 7. 공고하였고, 「공수처 검사(수사관)표준교재 개발」은 마감기한을 2024. 12. 20.로 하여 2024. 12. 9. 공고하였음.

공수처는 수사처검사와 수사관 대상으로 하는 표준교재 개발사업을 사업금액 1억 원, 공고기간 11일로 하여 입찰 공고하였으나, 국내·외 반부패 기구인 법무부(법무연수원),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의廉政公署, 말레이시아의 부패방지위원회 등의 수사전문 교재를 분석하고 표준교재를 개발하는 방대한 연구분야의 사업 입찰을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을 부여한 바 없고 집행부진으로 인해 연도 말에 긴급한 형태의 용역 발주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짐.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 집행의 경우 현재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권 간 조정 문제와 영장청구권, 공수처의 수사권의 범위, 인력 수급방안 등 많은 연구용역 과제들이 산재하여 관련 주제의 연구용역을 산정 집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집행이 미진한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수처는 연구용역 미발주 등으로 연구비를 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총 16차례 진행하였으며, 2024년 모든 심의를 서면심사를 통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 공수처 소관 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명, %)

위원회명	일자	장소	참석계획 (A)		참석실적 (B)		참석률 (B/A)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1.15.	서면	6	1	5	1	83	100
	1.23.	서면	6	1	5	1	83	100
	1.29.	서면	6	1	5	1	83	100
	2.20.	서면	6	4	5	4	83	100
	2.21.	서면	6	1	4	1	67	100

(단위: 명, %)

위원회명	일자	장소	참석계획 (A)		참석실적 (B)		참석률 (B/A)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4.16.	서면	6	1	4	1	67	100
	4.16.	서면	6	1	4	1	67	100
	4.17.	서면	3	1	3	1	100	100
	4.24.	서면	6	1	4	1	67	100
	4.24.	서면	6	1	4	1	67	100
	5.16.	서면	6	1	6	1	100	100
	6.20.	서면	6	1	6	1	100	100
	6.24.	서면	6	4	6	4	100	100
	10.1.	서면	6	4	5	4	83	100
	10.14.	서면	6	1	6	1	100	100
	12.3.	서면	6	4	5	3	83	75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5조¹⁷⁾에 따라 설치되어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동 관리규정 제6조제5항 전단에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며, 후단에서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¹⁸⁾하고 있음.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처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④ (생략)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2024년 개최한 16건의 위원회를 모두 서면심사를 하였는바, 공수처가 다른 위원회의 회의와 달리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모두 서면으로 심사한 것은 동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외부위원의 회의참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 확보 및 장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원격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공수처는 수도권에 소재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하여 공수처 내 회의장이 장소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서면심사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서면심사를 통한 회의 개최를 지양하고 공수처 자체 회의장을 활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공수처는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공수처 자체 회의장을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2023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치결과

1.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요 구 수 준						합 계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	—	—	2	8	—	10

2.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조 치 결 과			합 계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 미이행	
7	3	—	10

3.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가. 조치완료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 공수처는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여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각 1회 개최하였음 ○ 외부 호텔 등의 장소를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 장소 대여료 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등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집행되는 등 방만한 집행 우려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위원회 회의를 외부회의장에서 개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실시 - 자체 회의장 또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 적극 활용 ○ 외부 회의장 임차를 위한 예산 별도 반영('24년)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지적사항] ○ 공수처는 민원소통전문관 보수지급을 위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2023년 11월까지 민원소통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	○ 예산편성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실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매월 평균 약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음 ○ 공수처는 예산편성 당시 심의되지 않았음에도 공수처 출범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일반수용비 330만원, 임차료 745만원 등 총 1,075만원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예산편성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24년 민원소통전문관 인건비 집행실적 없음 ○ 공동학술대회 개최예산 별도 편성('24년)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지적사항] ○ 공수처는 2023년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이는 빅데이터 연관분석 시스템이 구축된 교육 시설과 공수처 수사업무 활용에 필요한 강의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용역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됨 ○ 교육 훈련 시행 시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한 파악으로 교육 시설 및 교육교재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부합한 예산비목을 사전에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에 부합한 예산편성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세목변경을 통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제도 개선	○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고 목적에 부합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지적사항] ○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 퇴직급여 적립금 납부 금액을 미리 산정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이 과소 편성(총 1억 7,100만원) 되어 편성된 고용부담금 총액의 74.8%에 달하는 1억 2,800만원을 전용으로 조달하였음 ○ 공수처의 공무원 근로자 중 퇴직연금 가입대상자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수는 총 3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결과 통보서에 가입자 수가 14명으로 적시되는 등 일부 누락이 발생하	제도 개선	○ 누락된 가입 대상자 및 임용 1년 도과한 공무원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연말 납부해야 할 적립금의 적정 규모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반영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누락된 가입 대상자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원을 포함한 법정 최소적립금을 조속히 산정하여 연말 납부하여야 할 적립금의 적정규모를 미리 파악한 후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반영할 것		
[지적사항] ○ 공수처의 전산 인력은 1명으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전산 인력이 부재하고, 신설 조직으로서 기존 시스템 위탁 운영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시스템 구축 후 외부 위탁운영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였음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기관 주요 정보시스템으로서, 향후 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이 추진되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와 개인정보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전담 전산 인력을 확보하여 충실한 운영 필요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전산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관리 및 운영을 할 것	제도 개선	○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행정직원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 법령으로는 충원이 곤란함 <공수처법> 제11조(그 밖의 직원)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 다만, 임시로 지지체에 전산인력을 파견 요청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전산인력 확보하였으나, ☞ 근원적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 개정 필요함 ○ 조치완료일 : '25년 1월 2일
[지적사항]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내 위원회 운영경비로 총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은 2,700만원에 그쳤고, 공판활동지원사업의 위원회 운영 경비 또한 5,300만원 중 900만원만 집행됨 ○ 예산 편성 시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등은 각 15회씩의 개최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3회만 개최되었고, 공보심의위원회는 20회를 계획했으나 5회만 개최되었음	제도 개선	○ 위원회 개최수요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정규모로 감액 편성함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내 위원회 운영경비 ▪ ('23년) 234백만원 → ('24년) 60백만원 → ('25년) 29백만원 - 공판활동지원 사업 내 위원회 운영경비 ▪ ('23년) 53백만원 → ('24년) 12백만원 → ('25년) 12백만원 ○ 각 위원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용 방지 노력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위원회 개최실적과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불용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		있도록 업무연찬 실시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지적사항] ○ 수사관련 위원회의 예산집행을 및 개최실적 부진은 수사 등 공수처 기능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등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지연 발생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하여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해병 특검 사건이첩 요구에 따라 수사 TF 운영 종료 및 사건 기록 이첩 ○ 조치완료일 : '25년 6월 27일

나. 조치 중인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 공수처는 특검 또는 일반적인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조직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회, 예산, 인사 업무 등 독립적인 행정 소요가 존재함에도, 타 수사기관과 비교할 때 검사정원 대비 검사 외 인력 정원 비율이 낮다(검찰청 3.7배, 공수처 2.4배)는 점에서,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의 수가 실제 소요대비 과부족 ○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민원소통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력 운용에 부담인 상황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기관 유지를 위한 핵심 업무를 정원 내 인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공수처 소속 행정직원과 파견공무원 간 적절한 부서 배치를 통해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기관 유지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	제도 개선	○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산출한 공수처 적정인력을 토대로 자체 인력 증원안을 마련해 국회 등을 상대로 개정 필요성 지속 건의 - 적정인력 : 검사 40명(+15), 수사관 80명(+40), 행정인력 50명(+30) ○ 공수처 인력 증원에 관한 의원입법 3건 발의 중 ※ 공수처 인력 증원 관련 법안 발의 및 상정 현황 - 발의(3건): 장경태의원안(검사 25→40명 증원, 수사관 40→80명 증원, 행정직원 20→50명 증원), 이성윤의원안(검사 25→50명 및 임기 3년→7년, 수사관 40→70명 및 임기폐지, 행정직원 20→60명), 전현희 의원안(검사 25→50명 증원 및 임기폐지, 수사관 40→60명 증원, 행정직원 20→40명 증원) ○ 제22대 국회를 대상으로 인력증원안 필요성 건의 및 입법활동 추진 ○ 조치예정일 : 입법활동 추진 중
[지적사항] ○ 공수처 검사의 경우 1기 검사 13명 중 1명만이 최종 연임(7.7%)되었고,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최근 3년간 퇴직자의 수가 총 15명으로 연평균 5명의 수사관이 퇴직하였음 -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수사관의 경우에도 6년의 임기가 적용됨에 따라 신분이 불안정하여 높은 퇴직률 초래 - 연임제한 외에도 채용 또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검사의 퇴직률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요인 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의 연임제한 규정 개정 등 수사처 검사의 연임제한에 따른 신분불안 해소책을 마련 및 추진함과 동시에, 검사	제도 개선	○ 검사 결원 4명. '25년 7월 현재 해당 결원에 대한 채용이 진행 중임. ○ 수사관 결원 2명. '25년 9월부터 채용 진행 예정임. ○ 향후 공수처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검사 및 수사관의 신분 불안 해소책을 마련하여 우수 인력 및 장기 재직 방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법적·제도적 보완 외에도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을 낮추기 위하여 인사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음 ○ 조치예정일 : '25년 11월 30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및 수사관의 채용기준 및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통해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을 줄일 것		
[지적사항] ○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게 수사권 또는 기소권이 있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검찰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 중 누구에게 영장 신청을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수사기관간 협의된 바가 없어 공수처 출범 후 현재까지 사법경찰관이 검찰청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신청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 예산 편성 시 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1년간 15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촉식 회의 한 건만이 개최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관련 수사기관과 영장신청과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의 집행실적을 제고하되, 이후 예산 편성 시 영장심의위원회 개최예산은 실적에 맞게 축소 편성할 것	제도 개선	○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는 경우 경찰의 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위원회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이후 최초로 경찰이 신청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하여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만들어졌고, 향후 경찰의 영장신청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위원회 개최 가능성이 높아짐. ○ 향후 회의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편성하겠음 ○ 조치예정일 : '26년도 예산확정일

